

## 변호사보수에 관한 고찰

-보수의 적정성, 성공보수 및 기타 관련 법리들에 관하여-

### Research on the Fees of an Attorney at Law

최 윤 희\*

Choi, Uni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성공보수     |
| II. 보수의 성격과 지급시기 | V. 기타 관련 법리들 |
| III. 보수의 적정성     | VI. 맺음말      |

본고에서는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한 몇 가지 법리들을 살펴보았다. 변호사의 보수약정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들과 법원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보수결정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합의에 의하도록 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등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소극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3. 5. 21. 규칙 제19호로 ‘변호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보수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 규칙은 2000. 1. 1.자로 폐지되어 현재 변호사 보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합리적인 합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의뢰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가 향후 필요하다고 본다.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성공보수 부분이다. 2015년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성공보수의 허용여부는 입법례를 보더라도 전면 금지에서부터 완전한 계약자유에 맡기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별로 접근방식이 다양하다. 성공보수 약정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성공보수 또한 일반적인 변호사의 보수와 마찬가지로 향후 그 적정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https://doi.org/10.35148/ilsilr.2020.47.161>

투고일: 2020. 8. 14. / 심사외일: 2020. 9. 23. / 게재확정일: 2020. 10. 14.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관련 법리로서 비환불 특약, 소송목적의 양수금지, 변호사보수 분배금지 등을 살펴보았다. 비환불 특약에 관하여 그간의 법원의 해석론이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변호사 보수 그 자체에 대한 적정성 기준이 향후 마련된다면 비환불 특약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송목적 양수금지에 있어서도 양수가 금지되는 소송의 목적은 계쟁 중의 권리라고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이지만, 계쟁 중 권리의 양수금지를 너무 좁게 해석한 나머지 실제에 있어서는 계쟁 중 권리의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보수분배금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라고 본다. 다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향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 성공보수, 비환불 특약, 소송목적의 양수금지, 보수분배의 금지

## I. 머리말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의뢰인”이라 함)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sup>1)</sup>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법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무료 봉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보수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sup>2)</sup>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의 보수는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사무 처리에 대한 비용으로 책정되는 것인 만큼, 그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보수책정 기준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로서의 노력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 반면, 업무를 위임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 보수 자체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한 사람의 변호사가 제대로 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고 기울인 노력을 생각한다면 보수는 상당히 고액이 될 수밖에 없는 반면, 비법률가인

1) 변호사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 및 제3조(변호사의 직무) 규정 참조

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업무처리 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변호사의 보수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보수의 법적 성격 및 그 결정과 지급방식, 관련 법리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보수결정을 위한 방향에 관하여 미력하나마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보수의 성격과 지급시기

### 1. 보수의 성격

변호사의 보수는 업무처리의 대가인가 아니면 업무처리 성과에 대한 대가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문제는 변호사선임계약의 법적 성격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변호사선임계약이 도급이라고 본다면 변호사의 보수는 당연히 업무처리 성과에 대한 대가이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는 승소 내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와야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에 이르게 된다. 반면, 변호사선임계약을 위임으로 파악할 경우, 변호사의 보수는 업무처리의 성과가 아닌 업무처리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의 보수가 업무처리의 대가로 지불된다고 보면, 변호사는 승소 여부를 떠나서 자신이 처리한 업무 그 자체의 대가로서 보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 학설의 다수설<sup>3)</sup>과 판례<sup>4)</sup>의 입장은 변호사선임계약의 법적 성격을 일반적으로 위임으로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 역시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처리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의뢰받은 사건을 성공하였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받은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청구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특별한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특약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성공보수로 약정한다면, 이 경우 변호사의 보수는 도급계약의 보수로서 승소 내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룬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지급청구 가능하게 된다.

3) 오종근, “변호사 보수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제27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81쪽.

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

## 2. 보수지급시기

보수결정방식에 따라서 보수지급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변호사선임계약의 법적 성격이 원칙적으로 위임이고, 이러한 위임계약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민법상 위임의 대가는 수임사무 처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변호사의 보수지급시기도 후불이 원칙이다. 그런데 실무관행을 살펴보면 위임의 성격을 가진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보수선급조항을 특별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수선급조항은 사건급의 경우 보수의 일부는 물론 전액에 대한 선급약정을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반면, 시간급의 경우는 실제로 일을 해보아야만 일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특성상 보수의 일부조로 착수금에 대한 보수선급약정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수금 전액에 대한 선급약정을 하기는 힘들다. 결국 시간급의 경우 보수전액에 대한 선급약정이 어려운 만큼 일부 착수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수에 대하여는 위임계약의 본질에 부합하게 원칙론으로 돌아가 그 지급시기가 후불이 될 수밖에<sup>5)</sup> 없다. 변호사 업계의 관행을 본다면 시간급 보수의 경우 사건이 장기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별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수선급이 어려운 또 다른 경우로서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임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변호사선임계약의 성격이 도급인 경우에는 사건급 방식이라 하더라도 성과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본연의 성격상 보수지급시기 또한 후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사의 보수를 전액 성공보수만으로 약정하고 별도의 착수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열심히 일하였다 하더라도 위임사무를 다 처리한 다음 결과적으로 선임계약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보수청구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보수지급 시기는 전액 후불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실무관행상으로는 보수 일부는 착수금으로 약정하고, 나머지는 성공보수조로 후불 약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sup>6)</sup> 인데 이는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혼합방식<sup>7)</sup>으로 보인다.

5) 정형근,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고찰”, 법조 제69권 제1호, 법조협회, 2020, 326쪽.

6)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2항 및 구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7)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대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례공보 제155호 1085면 이하”, 민사법학 제25권, 한국민사법학회, 2004, 207쪽.

### Ⅲ. 보수의 적정성

#### 1. 적정성보장을 위한 법운동 현황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변호사 윤리규약에 의하면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도한 보수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보수를 약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sup>8)</sup>한다. 과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 바도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합산액이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 일정한 금액 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현재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무부훈령은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송사건들을 각 소가금액의 일정한 구간별로 분류하여 적정한 보수액 가이드라인을 규정<sup>9)</sup>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국한되는 것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소송사무 전반에 걸쳐서 소가 금액을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구체적인 금액기준까지 설정한 변호사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sup>10)</sup>만큼, 과연 변호사보수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우리의 변호사 보수 관련 규정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구체적인 보수결정은 당사자의 합리적인 합의에 의하도록 하는 방식<sup>11)</sup>으로서 ‘부당하게 과도한 보수’ 내지 ‘현저하게 부당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보수의 적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으로서,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입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

8)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 제3항 및 변호사윤리규약 제31조

9) “변호사보수규정” [법무부훈령 제1171호, 2018. 8. 24. 제정, 2018. 9. 1. 시행]

10) 대한변호사협회 규칙 제19호로 1983. 5. 21. 제정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2000. 1. 1.자로 폐지되었음.

11) 오종근, “과도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한림법학 제14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80쪽.

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sup>12)</sup>이다. 관련 판례로서는 구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 내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초과한 보수를 약정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친구 아버지인 변호사에게 믿고 사건을 위임하게 된 경우, 일부 피고에 대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으나 실제로 집행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가압류해 놓았던 피고들에 대하여는 모두 패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 3천만 원의 약정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안<sup>13)</sup>이 있다. 이외에도 변호사와 의뢰인이 착수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위임사무 처리 도중 의뢰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수임 종료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sup>14)</sup> 등이 있다.

## 2. 보다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전문직들의 보수에 관한 규정들이 담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하여<sup>15)</sup> 1999. 2. 5. 입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 변호사법 제19조의 규정<sup>16)</sup>이 삭제되고, 이에 따라 종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정·적용해 온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변호사 보수 전반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우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 승소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소송비용 중 변호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완전한 소송비용 부담을 인정하

1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28765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1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9804 판결.

1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15) 이윤정,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규제방향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393쪽.

16) 구 변호사법 제19조(보수):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거 법 규정이 사라지게 됨.

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송비용에 산입할 보수의 기준<sup>17)</sup>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완전한 소송비용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 규정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함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sup>18)</sup> 보다 더 깊이 그 원인을 살펴본다면 변호사 보수의 책정기준 내지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사회 전반적으로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함에 연유하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합리적인 보수책정에 대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패소자에게 무조건 변호사 보수를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sup>19)</sup>한 측면이 있고, 합리적인 변호사보수의 책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건마다 난이도가 크게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전문성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보수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불합리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이러한 관점도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변호사보수의 적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sup>20)</sup>이

1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참조

18) 김용진, “변호사보수금의 소송비용화 내지 손해배상화 문제에 대한 약간의 고찰”, 법조 제20권 제2호, 법조협회, 1971, 17쪽.

19) 오종근, 앞의 논문 (각주 4), 99쪽.

20)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제5판, 박영사, 2014, 465쪽.

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협회의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의 입법으로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택하고 있는데, 소가에 근거한 매우 구체적인 보수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로 규정한 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따르는 편<sup>21)</sup>이라고 한다. 독일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입법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나라로서 1879. 7. 7.부터 1957. 7. 26.까지 시행된 ‘변호사의 보수규정 (Gebührenordnung für Rechtsanwälte)’ 에서 시작하여 1957. 7. 26.부터 2004. 7. 1.까지 시행된 ‘연방 변호사 보수법 (Bundesrechtsanwaltsgebührenordnung)’ 에 이어 현재의 ‘변호사 보수법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보수규정은 변호사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건축가나 엔지니어들과 같은 다른 전문직의 업무에 대하여도 입법 역사가 오래된 보수규정을 가지고<sup>22)</sup> 있다.

앞서 본 우리의 관련 규정들로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규정한 대법원규칙 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보수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법무부 훈령은 사건별 소가에 따른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독일 규정들과는 달리 이 규정들이 정치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라거나 혹은 변호사 보수의 현실적인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IV. 성공보수

### 1. 성공보수의 제한문제

변호사의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받는 것이 일반적<sup>23)</sup>이다.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위임사무인 소송사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고 해석<sup>24)</sup>된다. 변호사들의 실무관행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혼합하여

21) 한수웅, “독일의 변호사보수”, 법과사회 제11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5, 118쪽.

22) <<https://de.wikipedia.org/wiki/Geb%C3%BChrenordnung>>, 검색일: 2020. 6. 19.

23) 정형근, 앞의 책, 460쪽.

2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보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적으로 성공보수만으로 변호사 보수약정을 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도급의 법적 성격을 가진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승소하지 않는 한 사건 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 자신이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고에 대한 보수를 전혀 청구할 수 없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위임사무 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sup>25)</sup>는 해석론에 비추어 본다면, 변호사의 보수를 전액 성공보수로만 약정하는 것은 변호사업무의 원칙적인 성격이 위임이라는 점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러한 성공보수 약정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는 무자력인 의뢰인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sup>26)</sup>이 있는 반면, 변호사의 입장에서 승소를 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무리한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을 망각할 우려<sup>27)</sup> 등을 이유로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sup>28)</sup>도 있다. 실제로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이 성공보수를 금지 내지 제한하는 입법례에서부터 전적으로 허용하는 미국, 일본의 입법례<sup>29)</sup>까지 그 입장이 다양하다. 우리의 경우 미국, 일본과 유사하게 성공보수약정 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비교적 계약자유의 법리에 맡기는 입장으로서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에 대한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라는 판단기준<sup>30)</sup>을 사용하고 있다. 법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성공보수임이 인정된 사안으로서는, 의뢰인이 승소함으로써 받게 될 체납된 과거의 토지임대료 전액과 지상권설정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설정비용을 공제한 지상권 설정에 대한 일시보상금 전액을 합친 금액의 30퍼센트를 성공보수로서 변호사가 받기로 한 사안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토지임대료지급과 지상권 설정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기여한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비교하여 성공보수는 과거의 임대료 및 지상권 설정에 대한

25)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판결.

26) 정선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6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168쪽.

27) 박경재,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77쪽.

28) 전경운, 앞의 논문, 222쪽.

29) 이운정, 앞의 논문, 394-398쪽.

3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일시보장금을 합친 금액의 25퍼센트가 적당하다고 보아 감액을 명한 사례<sup>31)</sup> 등이 있다.

## 2.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문제

우리의 경우 그동안 성공보수에 대하여는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계약자유의 법리 하에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에 대하여 적정성의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입장<sup>32)</sup>으로 접근해 왔으나, 몇 년 전 대법원판결<sup>33)</sup>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가 되었다. 위 판결에 의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각종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가 변호사 제도이며,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위 판결은 변호사의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sup>34)</sup>과도 일맥상통하는데, 판결이 나온 이후 성공보수와 관련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특히 전관예우의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금지되어야 하며, 따라서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견해<sup>35)</sup>가 있는 반면, 다른 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모두 허용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만을 무효라고 판단한 논리의 형평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sup>36)</sup>도 있다. 즉, 변호사 지위의 공공성을 근거로 굳이 형사사건에서만 성공보수약정을 막을 수 있는 논거가 과연 합리적이나<sup>37)</sup>는

3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32) 오종근, 앞의 논문(각주 10), 95쪽.

3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34) 대법원 2011. 4. 22. 자 2011마110 결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35) 장운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동아법학 제6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12쪽.

36) 이창민/최한수, “형사성공보수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범경제학적 분석”, 범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6, 179쪽.

37) 김자영/백경희,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것이다. 변호사지위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다만, 성공보수를 형사사건에 국한하여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공보수 제한의 논리로서 보편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형사사건에만 국한하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성공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기울인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까지 부인될 수는 없다<sup>38)</sup>는 점에서 형사사건에 국한하여 성공보수가 금지된다는 위 판결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V. 기타 관련 법리들

### 1. 비환불 특약의 문제

변호사 보수약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점 중의 하나는 비환불 특약이다. 통상 비환불특약은 착수금과 관련하여 비환불 특약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상당수는 승소간주조항의 문구도 함께 사용되는 실정<sup>39)</sup>이다. 착수금 비환불 특약은 일반적으로 착수금을 선불로 지급하면서 일단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착수한 이상 착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 이를 승소로 간주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다. 변호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로서 승소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들 즉, 예컨대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와 화해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해임·위임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약정하는 것이다. 현재 비환불 특약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견해는 나뉘고<sup>40)</sup> 있지만, 우리 법원의 입장은 비환불 특약 자체를 금지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보수에 대한 판단기준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은 비환불 특약의 효력은 인정하되, 변호사가 지급받은 보수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위임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변호사의 위임사무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0쪽.

38) 정형근, 앞의 논문, 341쪽.

39) 최진안, 법조윤리 제3판, 박영사, 2014, 417쪽.

40) 최진안, 위의 책, 418쪽, 정형근, 앞의 책, 458쪽.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서 그 기여 정도에 합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sup>41)</sup>이다. 아울러, 승소간주 조항에 대하여도 통상적으로 승소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승소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해 사건에서의 승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승소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승소간주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sup>42)</sup>이기도 하다.

## 2. 소송목적의 양수금지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으로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하여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는 것이 모두 금지<sup>43)</sup>된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소송목적 양수를 금지하는 이유는 성공보수 금지의 논거와도 상통한다. 즉, 변호사의 법적 지위로서 공공성에 주목한다면 변호사가 소송의 목적을 의뢰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은 변호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 목적물을 양수함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변호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그 논거<sup>44)</sup>이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변호사의 소송 목적 양수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계쟁권리 양수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계쟁권리”라 함은 바로 계쟁중에 있는 그 권리이며 계쟁목적물 자체를 계쟁권리라 할 수는 없다<sup>45)</sup>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 법인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법인자금의 횡령, 사기 등 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의 변호사가 변론한 결과 의뢰인이 혐의 무 처분을 받은 이후, 변호사가 위 수임사건의 약정 성공보수금으로서 의뢰인이 소유한 위 법인 주식 중 일부를 양수받는 것은 계쟁권리양수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sup>46)</sup>하였다. 대체적으로

4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42) 대법원 1979. 6. 26. 선고 77다2091 판결.

43) 변호사윤리규약 제34조 제2항

44) 하정철, “변호사법 제32조상 ‘계쟁권리’의 범위: 변호사의 소송목적물 양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20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87-188쪽.

45)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보아 변호사보수와 관련하여 변호사가 보수를 지급받는 대신 소송의 목적을 의뢰인으로 부터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계쟁 중인 권리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소송의 목적물을 양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소송상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만을 계쟁권리로 해석해서 양도금지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소송의 목적물도 양도금지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sup>47)</sup>도 있다. 변호사의 소송목적양수금지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계쟁권리양수를 금한 규정은 변호사의 그와 같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금지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여 그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sup>48)</sup>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 3. 보수분배의 금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윤리규약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직으로서 변호사의 독점성에 근거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전문직이어서만 독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전문직으로서 독점성을 인정하여야만 그 독립성과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들로 보인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변호사는 비변호사 전문직들 예컨대 세무사 등과 동업을 하거나 공동수임으로 보수를 분배하는 것이 금지된다. 변호사가 이들 전문직을 고용할 수는 있지만, 비변호사 전문직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우리 판례에 의하여 비변호사의 보수분배가 인정된 사안들로는, 손해사정인이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본래의 업무에서 더 나아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한 경우,<sup>49)</sup> 비변호사가 형사사건의 답변서 등을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받은 경우,<sup>50)</sup> 비변호사가 경매사건 기일연기나 취하를 부탁하고

46) 대한변협 2006. 3. 3. 법제 제915호

47) 하정철, 앞의 논문(각주 41), 192쪽.

48)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1775 판결.

49)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경매신청 취하서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출한 경우<sup>51)</sup> 등이 있다. 반면, 법률사무가 아닌 단순 사실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해석되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를 하여준 경우에는 사실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비변호사의 보수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sup>52)</sup> 등이 있다. 보수분배와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보수분배금지 규정에 의하더라도 금지된다고 해석되는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고용행위를 우리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은 독립적으로 명시하여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소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비변호사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러한 변호사의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다<sup>53)</sup>는 점이며, 이에 대하여는 편파적 처벌규정이라는 비판<sup>54)</sup>이 있다. 처벌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입법에 있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변호사보수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 쟁점들과 관련 법리를 살펴보았다. 변호사보수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규율하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이다. 동일한 소가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크게 다를 수 있고 전문지식의 깊이와 내용이 변호사별로 동일하지도 않다. 따라서 획일적이고도 구체적인 변호사 보수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립된 독일<sup>55)</sup>식의 구체적인 보수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의문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5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26 판결.

5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5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5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54) 한인달, “변호사보수 분배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점”, 저스티스 제114호, 한국법학원, 2009, 150쪽.

55) 현재 독일은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뿐만 아니라 청소, 쓰레기 용역 등에 있어서도 법률규정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음

<<https://de.wikipedia.org/wiki/Geb%C3%BChrenordnung>>, 검색일: 2020. 6. 19.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적정한 보수책정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sup>56)</sup> 본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그 시기와 방법은 계속 검토하면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같은 관점에서 성공보수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 법원은 성공보수의 약정 자체는 허용하되 부당한 보수 금액을 적정성의 관점에서 제한하는 입장이다. 공공성과 시장의 조화가 필요<sup>57)</sup>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보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변호사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더 열심히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되는 동기 부여<sup>58)</sup>도 될 뿐만 아니라, 무자력의 의뢰인을 위해서 성공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보수 책정에 있어 일정부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결합된 형태의 보수금약정 방식이 관행화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다. 향후 형사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금지하기 보다는 모든 사건에서 성공보수의 약정은 허용하되, 이 또한 소가 대비 적정한 비율 내지 금액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그 적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보수와 관련한 기타 법리들로서 비환불 특약과 소송목적 양수 및 보수분배 금지를 살펴보았다. 비환불 특약의 경우 전반적으로 현재 법원의 입장이 우리의 법률실무 현실에 비추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즉, 비환불 특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하되, 비환불 특약을 맺었다고 하여 무조건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환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수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부당한 보수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은 대체로 무난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처음부터 변호사 보수 자체에 대하여 적정한 가이드라인이 향후 제시된다면 비환불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당사자 간에 보다 투명하고도 공정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변호사의 소송목적 양수금지에 대하여도 소송목적을 계쟁 중 권리의 양수금지로 해석하는 법원 및 다수설의 견해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양수금지 범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측면이 따른다. 다만, 계쟁 중 권리의 양수금지를 너무 좁게 해석한 나머지 외형상 소송 종료 직후 소송의 목적물을

56) 남동현, “독일의 변호사보수를 중심으로 검토한 재판비용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3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199쪽.

57) 하정철,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고려법학 제7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220쪽.

58) 김자영/백경희, 앞의 논문, 75쪽.

양수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계쟁 중 권리의 양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계쟁 중 권리의 양수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계쟁 목적물의 양수가 계쟁 중 권리의 양수와 동일시되는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계쟁의 목적물을 양수금지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앞으로의 검토대상이다.

이에 덧붙여 보수배분금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변호사보수의 배분을 금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비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업무를 하게 되거나, 혹은 비변호사와 변호사가 동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은 비변호사에게 변호사가 고용되어 직무상 독립성을 상실하고 공공성에 위배되는 업무처리를 하게 될 위험성<sup>59)</sup>을 경계함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이 없는 부분에서는 변호사의 동업 내지 보수 배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향후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sup>60)</sup>인 만큼, 보수분배금지 문제를 너무 보수적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한 우리 변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변호사는 공공성을 가진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공공성의 합리적 조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인하면서도,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함에 있어서 보수지급 및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목시의 약정이 있다고 해석<sup>61)</sup>하는 법원의 입장도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변호사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의 지식과 노력의 대가로서 보수지불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보수지불의 당위성을 전제로 하되 그 적정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양측의 합리적인 양식이 요구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전문직의 보수를 단순히 다른 서비스 내지 소비물품과 비교하는 입장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만큼,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력에 대한 보수가 결코 부당한 금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게 해주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59) 한인달, 앞의 논문, 136쪽, 134-159쪽.

60) 하정철, 앞의 논문(각주 53), 212쪽.

6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 참고문헌

### 1. 단행본

정형근, 법조윤리강의 제5판, 박영사, 2014.

최진안, 법조윤리 제3판, 박영사, 2014.

### 2. 학술지

김용진, “변호사보수금의 소송비용화 내지 손해배상화 문제에 대한 약간의 고찰”, 법조 제20권 제2호, 법조협회, 1971, 16-30쪽.

김자영/백경희,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9-103쪽.

남동현, “독일의 변호사보수를 중심으로 검토한 재판비용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3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 178-201쪽.

박경재,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금지논리와 그 한계”, 법학연구 제51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473-500쪽.

오종근, “변호사 보수에 관한 연구”, 법과사회 제27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4, 77-134쪽.  
\_\_\_\_\_, “과다한 변호사보수의 규제”, 한림법학 제14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75-99쪽.

이윤정,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규제방향에 대한 소고”, 강원법학 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379-421쪽.

이창민/최한수, “형사성공보수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법경제학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법경제학회, 2016, 165-185쪽.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 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동아법학 제6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97-328쪽.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대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판례공보 제155호 1085면 이하-”, 민사법학 제25권, 한국민사법학회, 2004, 199-225쪽.

정선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독일연방헌법재판소 2006년 12월 12일 결정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12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8, 144-169쪽.

정형근,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관한 고찰”, 법조 제69권 제1호, 법조협회, 2020, 321-356쪽.

하정철, “변호사법 제32조상 ‘계쟁권리’의 범위: 변호사의 소송목적물 양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법학논집 제20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85-206쪽.  
\_\_\_\_\_,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원칙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고려법학 제7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201-247쪽.

한수웅, “독일의 변호사보수”, 법과사회 제11권, 법과사회이론학회, 1995, 118-126쪽.

한인달, “변호사보수 분배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점”, 저스티스 제114호, 한국법학원, 2009, 134-159쪽.

### 3. 기타

<<https://de.wikipedia.org/wiki/Geb%C3%BChrenordnung>>, 검색일: 2020. 6. 19.

[ Abstract ]

## Research on the Fees of an Attorney at Law

Choi, Uni\*

According to the Article 2 of the “Attorney-At-Law Act”, each attorney-at-law shall perform his or her duties independently and freely as a legal professional of public nature. This reflects the status of a lawyer in our society, whose profession inherently has a public character. In the same line,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traditionally denied the merchant character of the status of a lawyer. On the other while, however, the Court acknowledges that a lawyer can request his or her client to pay the legal fees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contract of legal fees with the client. Also, the Court has sustained its position that the legal fees contract is valid unless the amount is too big to satisfy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equity rules. As for an average client who is not a lawyer, it is not always easy to find the amount proper and suitable in terms of the complexity and amount of work to be done by a lawyer. The Korean Bar Association once had its own ‘Rules about the Legal Fees’, under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Rules, however, were abolished at the end of the year 1999, due to th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monopoly of lawyers, which concerns are not fully agreed by the people at the present time. Even though I also think that the legal fees need to be under the principle of liberty of contract in a larger sense, at least some guidelines are needed. In this paper, I have also reviewed the matter of contingency fees. In 2015, the Court ruled a new decision about contingency legal fees of criminal cases, confirming that any contingency fees of criminal cases will be invalid from the point of time of the Court decision. The Court’s prohibition of the contingency fees of criminal cases is not comprehensible, since it had long acknowledged the validity of the contingency fees contract regardless of the kind of the related case whether it be criminal or civil or whatsoever. Also, given that the contingency fees are needed by an indigent client and can keep the lawyer’s eagerness to win the case, contingency fees need to be valid

---

\* Professor, Law School of Konkuk University

continuously regardless of the kind of case related.

In this paper, I have also reviewed other relevant legal matters such as non-refundable agreement, prohibition of lawyers' taking over subjects in dispute, prohibition of lawyers' fee-sharing with any person who is not a lawyer. About the matter of non-refundable agreement, the Court's position is quite reasonable that the agreement is valid unless the amount is too big to satisfy the principles of good faith and equity rules, which is in the same line with its position about the legal fees contract in general. As for the matter of prohibition of taking over subjects in dispute, I also agree with the translation of the Court that the 'subjects in dispute' means the rights in dispute. If I add one more to the translation, we should be wary of the possibility that any secret assignment of the right in dispute can be disguised in the form of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 property right after the dispute resolution. With regards to the prohibition of lawyers' fee-sharing with any person who is not a lawyer, the basic idea of the legislation is to protect the publicity and independence of a lawyer. The publicity and independence of a lawyer is very essential to the existence of the legal profession. I generally agree with the current law that it helps keep the independence of a lawyer, which will finally keep the public character of the legal profession. Given the global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it will be better if we add one exception to the current law. Fee-sharing with other expertise who is not a lawyer to win the case, needs to be allowed to further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lawyers.

[Key Words] Properness of Legal Fees, Contingency Fees, Non-refundable Agreement, Prohibition of Lawyers' Taking over Subjects in Dispute, Prohibition of Lawyers' Fee-sharing